

# 축산법 개정 법률안 주요 골자

▶ 일정규모 이상의 종돈업자등록 법제화. ▶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 등록 허가 법제화. ▶ 계열화생산원장 ▶ 범위반시 징역 또 벌금등 벌칙 받아야.

1. 일정규모이상의 종돈업을 포함한 종축업자를 등록케하여 가축의 개량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자는 종축의 검사, 등록, 검정 및 수출입허가를 제한토록함

가. 등록 : 도지사

나. 신고 : 도지사

- (1) 영업의양도, 임대 및 시설의 변경
- (2) 영업의폐업, 분업 또는 분업영업의 재개후 20일 이내

2.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자를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케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가축의 생산, 사육 및 출하조절과 생산된 가축의 비축, 판매 및 처리방법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사정상 필요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않거나 시설기타 사업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

가. 등록 : 도지사

○ 대상자 : 기업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

다명령 :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

- (1) 종축의 품종별 사육상향과 생산계획서의

제출

- (2) 종축을 이용한 가축의 생산, 사육 및 출하의 조절
- (3) 종축을 이용한 생산가축의 판매방법 및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

라. 혜택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종축의 종축업자에 대한 우선적인 공급

마. 제재 :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 종축업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종축검사등록, 검정 및 수출입의 규제

바. 예외조치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등록과 신고를 면제

나. 허가 : 도지사

○ 대상자 : 대통령이 정하는 모이상의 기업축산업

다. 등록과 허가기준 : 농수산부령으로 규정

라. 신고 : 도지사

- (1) 영업의양도, 임대 및 시설의 변경
- (2) 영업의 폐업, 휴업 또는 휴업한 영업의 재개시 20일 이내

마. 승인 : 도지사

허가받은 축산업자는 신고사항을 승인신청

바. 규제 : 도지사

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

- (1) 허가와 승인의 유보
- (2) 허가나 승인을 신청한자의 시설, 기타사업의 규모를 제한

사. 명령 :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

- (1) 가축의 사육상향과 생산계획서의 제출
- (2) 가축의 생산, 사육 및 출하의 조절
- (3) 생산된 가축의 비축·판매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.

3. 농가소득증대와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축협·허가받은 축산업자에 대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와 계약에 의한 계열화 생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

4. 등록 또는 허가받은 종축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기준을 위반하거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할 때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만원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○처분해당 사항

- (1)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허가받은 때
- (2) 등록기준 또는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
- (3) 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영업의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때
- (4) 명령에 위반한 때
- (5)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
- (1)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은 등록 또는 허가를 불용
- (2)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을 정지된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내에 사육하고있는 종축 또는 가축의 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으로 감축

### 벌 칙 사 항

- (1)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  - (가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
  - (나)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자

(2)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- (가)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축 또는 축산업을 영위한 자
- (나)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화업을 한 자.
- (다)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(라) 도살이 제한 또는 금지된 가축을 도살한 자
- (마)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

(3)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

- (가)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을 변경한 자
- (나) 법제18조(인공수정소의 등록) 법제20조(가축인공수정 및 정액의 사용제한) 법제27조(가축시장의 거래가축)의 규정에 위반한 자

(4) 100만원이하의 과태료

- (가)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
- (나) 법제17조(수정사의 면허 취소등) 제19조(수정사 등록취소등) 제23조(가축인공수정의 감독) 제34조(가축시장의 감독) 제41조(가축공제 단체의 감독)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- (다) 법제29조(담합행위등의 금지) 법제30조(대금의 결제) 규정을 위반한 자
- (라) 법제44조(기금의 조성)의 규정에 의한 부가금 또는 납입금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.